

##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분석에 대하여\*

김세화

**【요약문】** 이병덕 교수는 최근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에 의거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이병덕 교수의 분석에 대해 세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는 이병덕 교수가 분석적으로 타당한 논증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셀라스-브랜덤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셀라스-브랜덤이 가정법적 조건문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조건문 일반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반해 이병덕 교수는 이를 직설법적 조건문의 분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셀라스-브랜덤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병덕 교수의 분석이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와 양립가능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어】** 직설법적 조건문, 추론주의, 조건문, 실질적 추론, 셀라스, 브랜덤, 이병덕

1

이병덕 교수는 그의 논문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에서 셸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에 의거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sup>1)</sup> 이 분석에 의하면 직설법적 조건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sup>2)</sup>

‘A. ∴ C.’가 정당한 논증인 경우 ‘A→C’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이병덕 교수는 셸라스-브랜덤에 따르면 직설법적 조건문을 주장하는 것은 전건과 후건 사이에 정당한 추론관계가 성립함을 명시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라고 하며 위와 같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이병덕 교수는 주장하기를 전건과 후건 사이에 성립하는 정당한 추론관계는 연역뿐만 아니라 귀납도 포함되며, 직설법적 조건문이 이렇게 분석되면 기존의 분석이 안고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병덕 교수가 제시한 분석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이병덕 교수가 제시한 분석에 대한 필자 자신의 의문점을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이 분석에 대해 최근 제기된 다른 반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원배 교수는 최근의 논문 “논란 없는 원리를

---

1) 이병덕 (2008).

2) 이병덕 (2008), p. 140.

둘러싼 최근 논란”에서 이병덕 교수의 분석에 반론을 제기한다.<sup>3)</sup> 최원배 교수가 이 논문에서 제기한 반론 중 하나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연역이며 따라서 연역뿐만 아니라 귀납에 의해서도 직설법적 조건문이 정당화된다는 이병덕 교수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반론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 혹은 주장가능성조건에 대해 이렇게 메타언어적으로 접근하는 분석은 거의 없다. 필자가 아는 한 조건문의 정당성에 대한 메타언어적인 접근은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한 분석에 국한되어 있다.<sup>4)</sup> 물론 최원배 교수는 패리스<sup>5)</sup> 등의 학자를 인용하고 있지만 이는 직설법적 조건문을 둘러싼 논의의 역사에서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정당화는 연역만이 가능하며 귀납은 안 된다는 반론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주된 논의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3

필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의문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나온다. 필자의 의문점은 이병덕 교수의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분석이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로부터 정말로 도출되는가이다. 이 절에서는 구체적인 반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셀라스-브랜덤이 조건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병덕 교수가 그로부터 받아들인 것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셀라스-브랜덤에 의하면 비논리적 용어들의 의미는 올바른 실질

3) 최원배 (2011).

4) 예를 들어 Mackie (1962), Goodman (1991), 그리고 Bennet (2003)을 볼 것. 이와 관련하여 같이 논의를 하고 도움을 주신 노호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5) Faris (1968).

적 추론(material inference) 관계들에 의해 구성된다. 실질적 추론이란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다.<sup>6)</sup> 브랜덤의 저서에는 다음과 같은 타당한 실질적 추론의 예가 나온다:<sup>7)</sup>

“피츠버그는 프린스턴의 서쪽에 있다”로부터  
“프린스턴은 피츠버그의 동쪽에 있다”로의 추론.

“지금 번개가 보인다”로부터  
“곧 천둥소리가 들릴 것이다”로의 추론.

“비가 오고 있다”로부터  
“거리가 젖을 것이다”로의 추론.

브랜덤은 그 추론의 올바름이 전제와 결론의 개념적 내용을 규정하는 추론을 셀라스를 따라 “실질적 추론”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추론을 승인(endorsement)하는 것이 추론에 나오는 (비논리적) 개념들을 파악하고 마스터하는 것의 일부를 이룬다고 말한다.<sup>8)</sup> 전통적인 논리학에서는 형식적인 추론을 통해 실질적 추론이 설명되었던데 반해 셀라스-브랜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추론의 형식적 올바름은 추론의 실질적 올바름에서 기인하고 그것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9)</sup> 즉 본질적으로 논리적 용어를 수반하는 추론의 형식적인 타당함은 본질적으로 비논리적 용어를 수반하는 추론의 실질적 타당함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0)</sup> 셀라스-브랜덤에 의하면 논리(logic)란 우리의 모든 용어들의 사용을 다스리는 추

---

6) 이병덕 (2008), p. 50.

7) Brandom (2000), pp. 52-53.

8) Brandom (2000), p. 52.

9) Brandom (2000), p. 55.

10) Brandom (2000), p. 30.

론적 공약(inferential commitment)을 명시화(make explicit)하도록 돕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모든 개념들을 분명하게 하도록 (articulate) 돕는 것이다.<sup>11)</sup>

필자를 이를 통해 셀라스-브랜덤의 의미론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다. 첫째, 비논리적 용어들의 개념의 내용, 의미는 이 용어들이 나오는 올바른 실질적 추론들의 관계를 통해, 즉 올바른 실질적 추론들에서 이 용어들이 가지는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올바른 실질적 추론이란 전제와 결론에 나오는 비논리적인 개념들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추론이다.<sup>12)</sup> 셋째, 논리적 용어의 개념의 내용, 의미는 비논리적 주장과 개념들의 내용, 그리고 이들 사이의 추론관계를 명시화하는 그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sup>13)</sup>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브랜덤은 구체적인 논리적 개념이 어떠한 추론적 공약을 명시화하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예를 들어 부정(혹은 부정문)(negation)은 문장들이 실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 (material incompatibility)을 명시화한 것이다.<sup>14)</sup> 브랜덤은 여러 논리적 표현들 중 조건기호(혹은 조건문)(conditional)을 추론적 공약을 판단 혹은 주장의 내용으로서 명시화하는 용어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의하면 조건문은 특정 추론을 받아들일 만하다 (acceptable)고 혹은 타당(good)하다고 구분해내는 실천 행위 (practice)에 암묵적으로 내재해 있던 것을 주장이라는 형식으로 명시화한 것이다.<sup>15)</sup> 브랜덤은 논리적 개념에 대한 자신의 이론이 실은 프레게에게도 이미 보인다는 것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16)</sup>

11) Brandom (2000), p. 30.

12) Brandom (2000), pp. 43-44.

13) Brandom (2000), p. 21을 볼 것.

14) Brandom (2000), p. 60.

15) Brandom (2000), p. 81.

왜 조건문인가? 조건적 표현이 도입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do*) 있었는데, [즉] 특정 판단이 포함된 어떤 추론들은 승인하고 어떤 추론들은 거부함으로써 그 특정 판단이 특정한 내용을 가진 것으로서 다를 수 있었다(그 판단이 그 특정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여길 수 있었다). 조건적 표현이 도입된 후에 우리는 어떤 추론이 받아들일 만하다 *라고(that)...* 말할 수(*say*) 있게 되었다. 우리는 전건 혹은 전제와 후건 혹은 결론 사이의 실질적 추론관계를 명시화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브랜덤에 의하면 조건문이란 어떤 실질적 추론은 승인하고 다른 추론은 거부하는 우리의 실천 행위 속에 암묵적으로 내재해 있는 문장들 사이의 추론관계를 명시적으로 하나의 주장으로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이병덕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17)</sup>

다시 말하면, 조건적 표현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우리는 전제와 결론 사이에 정당한 추론관계가 성립함을 암묵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건적 표현이 도입된 이후에는 [“만약 래시가 개라면, 래시는 개다”와 같은] 조건문을 주장함으로써 전건과 후건 사이에 정당한 추론관계가 성립함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암묵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어떤 추론은 승인하고 다른 추론은 거부하는 우리의 실천 행위로 이해하고 뒤에 나오는 “명시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건문이라는 형태의 주장으로서 말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그리고 “정당한 논증(warranted argument)”을 “받아들일 만한(acceptable) 혹은 타당한 추론(good inference)”으로 이해하면, 마지막으로 “직설법적 조건문”을 “조건문”으로 이해하면,<sup>18)</sup> 이병덕 교

<sup>16)</sup> Brandom (2000), p. 60. 같은 부분에 대한 인용이 이병덕 (2008), p. 140에도 등장한다.

<sup>17)</sup> 이병덕 (2008), p. 140.

수의 이 주장은 위에서 본 브랜덤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렇다고 할 때 셀라스-브랜덤에서 다음과 같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분석이 도출되어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 C.’가 정당한 논증인 경우 ‘A→C’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 4

이제 이병덕 교수가 말하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분석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는 “정당한 논증”이 크게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주장하기를 셀라스-브랜덤에 따르면 정당한 연역 논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형식적으로 타당한” 논증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타당한” 논증이라고 한다.<sup>19)</sup> 이 구분은 이미 3절에서 본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타당한 논증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론 형식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그러한 논증이다. 이병덕 교수는 실질적으로 타당한 논증은 “논리적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추론들에 포함된 ‘홀수’, ‘짝수’, ‘서쪽’, ‘동쪽’, ‘로봇’, ‘동물’과 같은 비논리적 표현들의 의미에 의해 타당한 추론”이라고 말한다.<sup>20)</sup> 그가 든 실질적으로 타당한 논증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sup>21)</sup>

“x는 홀수이다” → “x는 짝수가 아니다”.

“x는 y의 서쪽에 있다” → “y는 x의 동쪽에 있다”.

18) 이 마지막 이해 조건에 대해서는 5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9) 이병덕 (2008), p. 141.

20) 이병덕 (2008), p. 142.

21) 이병덕 (2008), p. 142.

“x는 로봇이다” → “x는 동물이 아니다”.

이 예들은 앞에서 브랜덤이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예로 든 “피츠버그는 프린스턴의 서쪽에 있다”로부터 “프린스턴은 피츠버그의 동쪽에 있다”로의 추론과 같은 종류의 것들이다. 다음으로 정당한 귀납 논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연성이 높은 귀납 논증을 가리킨다. 이병덕 교수에 의하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정당한 논증의 전제와 결론이 각각 전건과 후건으로 나타난 직설법적 조건문이 정당하게 주장될 수 있는 직설법적 조건문이다. 정당한 논증에 크게 연역과 귀납,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정당한 연역은 다시 형식적으로 타당한 논증과 실질적으로 타당한 논증으로 나뉜다는 이병덕 교수의 설명에 대해서 필자의 첫 번째 의문점이 생긴다.

셀라스-브랜덤의 이론에 대해서 필자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좋은 혹은 타당한 추론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 한 가지밖에 없다. 물론 셀라스-브랜덤이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과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을 구분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개념적인 구분으로서 실제로는 타당한 실질적 추론에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이 속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바르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가 추론의 형식적 올바름은 추론의 실질적 올바름에서 기인하고 그것을 통해 설명되어야 하며, 추론의 형식적인 타당함은 추론의 실질적 타당함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3절에서 본 브랜덤의 주장과 일치하는 이해이다. 같은 맥락에서 브랜덤은 또한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옳바른 추론의 개념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의될 수 있으며 그 역은 아니다”라고 하였다.<sup>22)</sup> 셀라스 역시 추론의 실질적인 규칙(material rule)이 추론의 형식적인 규칙에도 본질적이라고 하고 있어 필자의 이러한 이해를 더욱 뒷받침

22) Brandom (2000), p. 55.



해주고 있다.<sup>23)</sup> 이병덕 교수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은 마치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analytically valid inference)에 국한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셀라스-브랜덤의 주장과 거리가 있는 설명이다.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 개념은 이병덕 교수의 설명과는 달리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 개념을 넘어서는 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셀라스-브랜덤이 말하는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 개념이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 개념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필자의 주장은 브랜덤이 직접 제시한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예들에 의해 좀 더 뒷받침 될 수 있다. 위에서 본 브랜덤의 예들을 다시 한 번 보자.<sup>24)</sup>

“피츠버그는 프린스턴의 서쪽에 있다”로부터  
 “프린스턴은 피츠버그의 동쪽에 있다”로의 추론.

“지금 번개가 보인다”로부터  
 “곧 천둥소리가 들릴 것이다”로의 추론.

“비가 오고 있다”로부터  
 “거리가 젖을 것이다”로의 추론.

이들 중 첫 번째 예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브랜덤은 두 번째 추론이 적절한 추론이 되는 것은 번개와 천둥 개념의 내용,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의 내용 때문이라고 한다.<sup>25)</sup> 그렇다면 브랜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예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23) Sellars (1991), pp. 292-293.

24) Brandom (2000), p. 52.

25) Brandom (2000), p. 52.

이러한 오해는 추론주의 의미론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풀릴 수 있다. 추론주의 의미론에 의하면 이러한 개념의 내용 때문에 이 추론이 타당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실천 속에서 서로 이러한 추론을 타당한 것으로 승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 개념의 의미 때문에 타당한 추론이 되는 것이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라면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은 추론에 포함된 (비논리적) 개념들의 의미를 규정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추론이다. 따라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예들은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예가 아니며 따라서 필자가 주장한 바대로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은 우리가 흔히 아는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 개념을 넘어선다.

이병덕 교수는 또한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개념이 정당한 혹은 개연성이 높은 귀납 논증과 구분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이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위의 두 번째 예와 세 번째 예는 사실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예도 아니며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예도 아니다. 오히려 이 예들은 귀납 논증에 의해 정당화되는 추론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추론은 이병덕 교수가 말한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에머랄드들은 녹색이었다”로부터 “따라서 모든 에머랄드들이 녹색일 개연성이 높다”로의 추론과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귀납 추론을 바탕으로 “이것은 에머랄드이다”로부터 “이것은 녹색일 것이다”로의 추론이 가능하며 또 정당화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에머랄드이다”로부터 “이것은 녹색일 것이다”로의 추론을 귀납 논증에 의해 정당화되는 추론이라고 보는 것이 크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귀납적으로 정당화되는 추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에머랄드이다”로부터 “이것은 녹색일 것이다”로의 추론 및 위에 나온 두 번째, 세 번째 추론의 예가 이병덕 교수가

제시한 세 가지 정당한 추론 형식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추론들은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도,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는 추론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셀라스-브랜덤에 대한 보다 올바른 해석이다.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는 추론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에 해당한다는 필자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브랜덤의 논의에 의해 더욱 뒷받침 된다:<sup>26)</sup>

내가 여기서 ‘합리성의 규범적인 세밀 구조’라고 부르는 것은... 넓게 보아 추론적인 여러 관계의 집합(the constellation of kinds of broadly inferential relat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은 적어도 세 가지의 기본적인 추론 관계들을 구분하고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약-보존적 추론(commitment-preserving inference), 자격-보존적 추론(entitlement-preserving inference), 그리고 양립불가능성(incompatibility)이다. 첫 번째는 논리학의 형식주의 전통에서 연역적 추론으로 보이는 것을 일반화한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집합이다. 두 번째는 형식주의 전통에서 귀납적 추론으로 보이는 것을 일반화한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집합이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전통적 추론의 형식은 없다.

이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약-보존적 추론은 연역을 일반화한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고 자격-보존적 추론은 귀납을 일반화한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라는 점이다. 즉, 브랜덤은 정당한 연역과 귀납 논증 모두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셀라스-브랜덤에게 있어서 정당한 논증, 올바른 추론은 한 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다.

---

<sup>26)</sup> Brandom (2000), pp. 43-44.

그리고 형식적으로 타당한 논증, 분석적으로 타당한 논증, 귀납적으로 타당한 논증 모두가 이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에 속하는 것이다. 이병덕 교수는 이 중 분석적으로 타당한 논증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셀라스-브랜덤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이것이 필자가 이병덕 교수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반론, 의문점이다.<sup>27)</sup>

27) 익명의 한 심사위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병덕 교수는 그의 2005년 논문에서 실질적 추론에 관한 셀라스와 브랜덤 사이의 견해 차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 둘 중에서 셀라스의 견해를 옹호하는데, 셀라스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은 포함된 비논리적 용어들의 의미를 구성하는 추론들이고, 이런 의미에서 ‘분석적 추론들’(analytic inferences)이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적 추론’은 단지 의미에 의해 타당한 추론이다. 즉, 셀라스에 의하면 의미구성적 추론들과 비의미구성적 추론들 사이의 구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은 의미구성적 추론들이다. 반면에, 브랜덤은 의미구성적 추론과 비의미구성적 추론 사이의 구분을 거부하고 모든 옳은 추론들은 의미와 관련된 추론들이라고 주장한다. 즉 브랜덤에 의하면 귀납적으로 옳은 추론도 의미구성적 추론, 즉 분석적 추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셀라스와 브랜덤 모두에게 있어서 모든 의미구성적 추론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고 모든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은 분석적 추론이라는 것이며, 분석적으로 타당한 논증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라고 보는 이병덕 교수의 주장이 셀라스-브랜덤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필자의 첫 번째 반론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병덕 교수의 2005년 논문 내용에서 ‘분석적 추론’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는 이병덕 교수를 도와주지 않는 지적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미구성적 추론은 무엇인가? 한 자연스러운 대답은 그러한 추론은 **분석적 추론(analytic inference)**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분석적 추론은 정의상 단지 **의미에 의해서** 타당한 추론이다. 따라서 **추론주의자는 분석적 추론 개념에 호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추론주의자는 의미구성적 추론을 의미의 개념을 선제(presuppose)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병덕, 2005, p. 49. 마지막 강조는 필자의 강조) 결국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과 분석적 추론을 동일시하는 주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병덕 교수 자신도 2005년 논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셀라스를 받아들여진 브랜덤을 받아들여진 마찬가지로 분석적으로 타당한 논증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라고 보는

5

위에서 제기된 반론에 대해 이병덕 교수는 자신의 분석에 아주 조그만 수정만을 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른다. 즉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위에 제시된 분석 대신 다음의 분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런 사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A. ∴ C.’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인 경우 ‘A→C’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 역시 셀라스-브랜덤으로부터 적절하게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먼저 필자는 셀라스-브랜덤이 “직설법적 조건문”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들은 “조건문 (conditional)”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했다. 그리고 바로 위에서 본 것처럼 브랜덤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을 사실상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이것이 다시 한 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28)</sup>

따라서 이유를 주고 묻는 게임을 통합한 실천에서 반드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규범적 지위, 즉 공약 (commitment)과 자격(entitlement)은 그러한 실천 안에서 적절하게 등장하는 문장들이 표현하는 언명적 내용에 세 가지 종류의 추론적 관계들을 발생시킨다.

공약적(즉, 공약-보존적) 추론. 이것은 연역적 추론을 일반화한 범

---

것은 셀라스-브랜덤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필자의 첫 번째 반론은 여전히 성립한다.

<sup>28)</sup> Brandom (2000), p. 194.

주이다.

허용적(즉, 자격-보존적) 추론. 이것은 귀납적 추론을 일반화한 범주이다.

양립불가능성 함축(incompatibility entailment). 이것은 양상(반사실적 조건문을 지지하는) 추론을 일반화한 범주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브랜덤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은 그것이 가지는 규범적 지위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각각의 범주는 전통적 논리학에서 말하는 연역, 귀납, 그리고 심지어 반사실적 조건문과 같은 양상 추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셀라스-브랜덤이 말하는 “조건문”은 직설법적 조건문뿐만 아니라 반사실적 조건문과 같은 가정법적 조건문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 중 공약-보존적 추론관계를 명시화한 조건문과 자격-보존적 추론관계를 명시화한 조건문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셀라스-브랜덤이 말하고 있는 “조건문”은 한 가지 종류의 조건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셀라스-브랜덤이 말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정리될 수 있어 보인다. 첫째, 셀라스-브랜덤이 말하는 “조건문”이란 가정법적 조건문을 포함하여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조건문 전체이다. 둘째, 이들은 “조건문”이라는 큰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실천 행위 속에 암묵적으로 내재해 있는 문장들 사이의 실질적 추론관계를 명시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셋째,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조건문들은 우리의 실천 행위 속에 암묵적으로 내재해 있는 추론 관계가 무엇이나에 따라, 즉 위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추론 관계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각각 구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된 셀라스-브랜덤의 조건문에 대한 이론과

이병덕 교수의 주장은 그 차이가 매우 커 보인다. 셀라스-브랜덤이 가정법적 조건문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조건문 일반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반해 이병덕 교수는 이를 직설법적 조건문의 분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셀라스-브랜덤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이것이 필자가 이병덕 교수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반론, 의문점이다.<sup>29)</sup>

29) 익명의 한 심사위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병덕 교수]의 견해가 셀라스-브랜덤 견해에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그의 제안이 셀라스-브랜덤의 견해를 단지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셀라스-브랜덤 견해와 이병덕 교수의 견해 사이에 구체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실 자체는 이병덕 교수의 제안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병덕 교수는 그의 논문 (2008)에서 명시적으로 “셀라스-브랜덤 추론주의에 의하면, ‘만일 A이면 C이다’ 형태의 직설법적 조건문은 ‘A’와 ‘C’ 사이에 정당한 추론관계가 성립함을 명시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에 관한 이와 같은 추론주의적 견해를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p. 135)라고 밝히고 있다. 논문의 내용에서도 이병덕 교수는 브랜덤이 조건문에 대해 말한 바를 인용하고 있다(p. 140). 따라서 이 논문을 읽는 사람으로서 이병덕 교수가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셀라스-브랜덤의 이론을 받아들여 이것을 옹호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의 의도를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병덕 교수의 진정한 의도는 셀라스-브랜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들이 말하지 않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이병덕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셀라스-브랜덤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은 무엇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셀라스-브랜덤의 이론에 비해서 자신의 이론을 어떻게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드는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병덕 교수의 진정한 의도가 셀라스-브랜덤이 말하지 않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병덕 교수가 제시한 이론이 궁극적으로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가 다음 절에서 밝히는 세 번째 반론을 피할 수 없다.

## 6

위에서 제기된 반론에 대해 이병덕 교수는 다시 한 번 자신의 분석에 아주 조그만 수정만을 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할지 모른다. 이병덕 교수는 이미 그의 논문에서 직설법적 조건문과 가정법적 조건문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30)</sup> 그렇다면 셀라스-브랜덤이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직설법적 조건문뿐만 아니라 가정법적 조건문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조건문 전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분석의 대상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조건문 전체를 M-조건문이라고 부르고 이 M-조건문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지도 모르겠다.

‘A. ∴ C.’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인 경우 ‘A<sup>M</sup>→C’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 역시 문제가 있다. 만약 이를 궁극적으로는 결국 한 가지 종류의 조건문이 존재하며 모든 조건문은 결국 그 의미가 위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면 이것은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 이론과 양립가능하지 않다.

3절에서 본 것처럼 셀라스-브랜덤에 의하면 논리란 용어들의 사용을 다스리는 추론적 공약을 명시화하도록 돕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모든 개념들을 분명하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리적 용어의 개념의 내용, 의미는 비논리적 주장과 개념들의 내용, 그리고 그들 사이의 추론관계의 명시화에 의해 결정된다. 서로 다른 논리적 용어의 개념들은 그것들이 어떤 추론적 공약을 명시화

<sup>30)</sup> 이병덕 (2008), p. 156.



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같은 추론적 공약을 명시화하면 같은 의미를 가지는 논리적 용어가 되고 다른 추론적 공약을 명시화하면 다른 의미를 가지는 논리적 용어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건문 전체는 전건과 후건 사이에 올바른 혹은 정당한 실질적 추론관계가 성립함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크게 보아서는 같은 범주의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실질적 추론관계가 실제로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특정 조건문들은 이들 중 어떤 종류의 정당한 실질적 추론관계가 성립함을 명시화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서로 다른 종류의 조건문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브랜덤에 의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적어도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정당한 실질적 추론관계가 존재하며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조건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한 가지 조건문으로 뭉뚱그려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용어건 비논리적 용어건 그것이 하는 역할에 의해 의미가 달라진다는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 이론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역할이 크게 보아서는 비록 동일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역할을 볼 때 서로 구분되는 것이라면 그 의미는 서로 달라져야 하며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논리적 용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sup>31)</sup>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의에 의해 좀 더 뒷받침된다. 브랜덤은 규범적 용어는 실천적 추리(practical reasoning)의 실

31) 각주 27에서 보인 심사위원의 말대로 이병덕 교수가 의미구성적 추론과 비의미구성적 추론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전자만이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라는 셀라스의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의미구성적 추론과 비의미구성적 추론이 하는 역할은 보다 분명하고도 중요하게 구분이 되며 따라서 보다 분명하고도 중요하게 그 의미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두 종류의 정당한 추론들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라는 하나의 범주 하에 묶일 수조차 없으며 이 둘 사이의 의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질적 올바름에 대한 승인을 명시화한다고 말하고 있다.<sup>32)</sup>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33)</sup>

규범적 용어는 조건문이 이론적 측면(theoretical side)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적 역할을 실천적 측면(practical side)에서 한다.

브랜덤이 든 규범적 용어의 예들은 “선호한다(prefer),” “할 필요가 있다(obliged),” “해야 한다(ought)”이다. 이로부터 “선호한다,” “의무가 있다,” “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 모든 규범적 용어들이 실천적 추리의 실질적 올바름에 대한 승인을 명시화하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조건문이 이론적 추리의 실질적 올바름에 대한 승인을 명시화하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건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위의 인용문은 “조건문”이라는 표현으로 브랜덤이 가리키는 것이 “규범적 용어”라는 표현처럼 서로 다른 여러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광범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이와 달리, 만약 이 분석을 여러 가지 종류의 조건문을 모두 포함하는 “M-조건문”이란 매우 광범위한 범주의 조건문에 대한 메타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이러한 분석은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 이론과 양립가능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 종류의 조건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커다란 역할을 전건과 후건 사이에 올바른 실질적 추론관계가 성립함을 명시적으

<sup>32)</sup> Brandom (2000), p. 89.

<sup>33)</sup> Brandom (2000), p. 89.

로 표현하는 것으로 밝힌 점은 분명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조건문에 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분석이나 이론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메타 분석만을 제시하는 것은 각론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채 너무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에 그칠 뿐이면 그 대상 개념에 대한 정확하고도 세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개념에 대한 철학적 분석에서 기대하는 바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분석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도 세밀하며 정교한 분석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이면서도 세밀하며 정교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명료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 분석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M-조건문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철학에서 기대하는 분석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제기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반론, 의문점은 만약 이병덕 교수가 M-조건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와 양립가능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병덕 교수는 자신의 분석이 기존의 분석이 갖고 있는 많은 난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분명 이것은 그 분석이 가지는 장점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장점이지 절대적인 장점은 결코 아니다. 특히 그 분석이 만약 기존에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만약 기존의 분석들이 각각 특정한 문제점을 가지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하지는 않으면서도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

34) 이병덕 교수의 분석이 기존에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의에 관해서는 최원배 (2011), pp. 90-93를 볼 것.

한 세밀하고도 통찰력 있는 이론을 제시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존의 분석을 받아들일 이유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한다.

## 7

본 논문에서 필자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이병덕 교수의 분석에 대해 세 가지 반론,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는 이병덕 교수가 분석적으로 타당한 논증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셀라스-브랜덤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셀라스-브랜덤이 가정법적 조건문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조건문 일반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반해 이병덕 교수는 이를 직설법적 조건문의 분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셀라스-브랜덤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병덕 교수의 분석이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와 양립가능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나름대로 셀라스와 브랜덤의 저서를 읽고 추론주의적 의미론과 조건문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필자는 결코 추론주의의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이병덕 교수의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분석이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고 반론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조심스럽다. 그래서 필자는 “의문점”이란 용어를 통해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였다.<sup>35)</sup>

35)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좋은 토론을 같이 해주신 노호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 이병덕 (2005), “추론주의는 포도와 르포오의 비판들을 피할 수 있는가?”, 『철학적 분석』 제 12호, pp.47-76.
- 이병덕 (2008),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 『철학적 분석』 제 17호, pp.135-164.
- 최원배 (2011), “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최근 논란”, 『논리연구』 제 14집 제 3호, pp. 85-99.
- Bennett, J. (2003), *A Philosophical Guide to Conditionals*, Oxford University Press.
- Brandom, R. (2000), *Articulating Reasons: An Introduction to Inferenti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 Faris, J. A. (1968), “Interderivability of ‘ $\supset$ ’ and ‘if’”, in *Logic and Philosophy: Selected Readings*, ed. G. Iseminger, Appleton-Century-Croft, pp. 203-210.
- Goodman, N. (1991), “The Problem of Counterfactual Conditionals”, in *Conditionals*, ed. F. Jackson, Oxford University Press, pp. 9-27.
- Mackie, J. L. (1962), “Counterfactuals and Causal Laws”, in *Analytical Philosophy: First Series*, ed. R. J. Butler, Blackwell, pp. 66-80.
- Sellars, W. (1991), *Science, Perception and Reality*, Ridgeview Publishing Company.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Scranton Honors Program, Ewha Womans University

seahwak@ewha.ac.kr

---

## On the Inferentialist Analysis of the Indicative Conditional

Seahwa Kim

---

Recently Professor Lee has suggested the analysis of the indicative conditional based on Sellars-Brandom's inferentialism. In this paper, I raise three questions. First, Professor Lee seems to misunderstand Sellars-Brandom in that he considers only the analytically valid arguments as materially valid inferences. Second, Professor Lee seems to misunderstand Sellars-Brandom in that whereas Sellars-Brandom talks about the common features of all kinds of conditionals including counterfactual conditionals, Professor Lee takes it as the analysis of the indicative conditional only. Third, either Professor Lee's analysis is incompatible with Sellars-Brandom inferentialism or his analysis is too general.

**Key Words:** The indicative conditional, Inferentialism, conditional, Material conditional, Sellars, Brandom, Byeongdeok Lee